

"희망찬 변화, 행복도시 광주"



오 포 1 동



수신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공유재산(하천)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사전통지 공시송달
공고

「하천법」 제33조(하천의 점용허가 등) 규정 위반에 따라 같은 법 제37조(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) 및 제48조(원상회복의무)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게 원상복구 및 변상금 부과통지서를 발송하고자 하나 행위자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1. 공고 내용 : 공유재산(하천)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복구 통지
2. 공고 기간 : 2024.09.27. ~ 2024.10.25.
3. 공고 장소 :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
4. 처분 근거 : 「하천법」 제48조(원상회복의무)
5. 미배달사유: 행위자불명
6. 공시송달 대상 : 경기도 광주시 문형동 815번지 상 컨테이너 2동. 끝.

주무관 **박기연** 지역안전팀장 대결 2024. 9. 24. 지역안전과장 전결
임현우

협조자

시행 지역안전과-16839 접수

우 12738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, (송정동) / <https://www.gjcity.go.kr>

전화번호 031-760-8731 팩스번호 031-760-1421 / anne0512@korea.kr / 대국민 공개

소중한 개인정보 안전하게 보호하고 다함께 지켜요!